

1. 개정이유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16.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본문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대기환경정책과장·대기미래전략과장·대기관리과장·교통환경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기환경정책과장·대기미래전략과장·대기관리과장·교통환경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

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으로, “서기관 · 기

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행정사무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환경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며”를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

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행정사무관 ·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으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평가국장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천국장 및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 · 수질총량관리과장 · 환경감시과장 · 수질관리과장 · 기획과장 · 환경관리과장 · 자연환경과장 · 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 및 하천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화학

물질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제34조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를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를 “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을 “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중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같다”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을 임용하고,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부터 같은 조 제9항 단서까지 중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같다”를 “같으며, 별표 16의3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같다”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별표 10의4,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6의2, 별표 16의3, 별표 17은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본문 관련)

총계	633
정무직 계	2
장 관	1
차 관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장관정책보좌관)	1
비서(6급 상당)	2
일반직 계	627
고위공무원단	1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5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7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6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	12

는 시설사무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35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 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 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5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5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임 업사무관	2
전산사무관	3

공업사무관	1
시설사무관	4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	1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주사	21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또는 전산주사	5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9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7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공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29
전산주사	2
공업주사	1
기상주사 또는 시설주사	3
시설주사 또는 연구사	1
방송통신주사	1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8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 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1
공업주사보 · 기상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
전산주사보	2
시설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 서기	21
전산서기	1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4
운전서기보	2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9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공업전문관 · 보건전문관 · 환경 전문관 또는 시설전문관	17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통신 담당)	1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단서 관련)

총계	633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장관정책보좌관)	1
비서(6급 상당)	2
일반직 계	627
고위공무원단	1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5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7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6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35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10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5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
전산사무관	3

공업사무관	1
시설사무관	4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	1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주사	21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또는 전산주사	5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7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9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공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29
전산주사	2
공업주사	1
기상주사 또는 시설주사	3
시설주사 또는 연구사	1
방송통신주사	1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8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 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3
공업주사보 · 기상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 설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
전산주사보	2
시설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 서기	19
전산서기	1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3
운전서기보	2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5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공업전문관 · 보건전문관 · 환경전문관 또는 시설전문관	17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통신 담당)	1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총계	401
일반직 계	40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공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또는 환경주사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
통계주사 · 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0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5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10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
행정서기보	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8
운전서기보	4
방호서기보	2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4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6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0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8
공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0
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8
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기록연구사	1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56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39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48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3
공업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7
공업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9
수의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
기상연구사	2
기계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화학물질 등록평가 담당)	3
전문경력관 나군(화학물질 등록평가 담당)	9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2항 관련)

총계	33
일반직 계	33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행정주사	4
행정주사 · 환경주사 또는 간호주사	1
공업주사 · 농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보	2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
행정서기 · 환경서기 ·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2
공업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기록연구사	1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4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3항 관련)

총계	23
일반직 계	2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공업연구원·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임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원·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
행정사무관·공업연구원·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 또는 환경주사	2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2
공업연구원·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
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0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4항 관련)

총 계	19
일반직 계	19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수석 전문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 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 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환경주사 또는 연구사	1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 경연구관	2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 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 경연구사	1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5항 관련)

총계	33
일반직 계	33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농업 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 또는 수의연구원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 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 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환 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행정서기·공업서기·보건서기·전산서기·환경서기·시 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
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 또는 수의연구원	3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수의연구사	15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본문 관련)

총계	741
일반직 계	741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 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	2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 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0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 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
행정주사	24
행정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 또는 전산주사	3
행정주사·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4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29

공업주사 · 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32
환경주사	4
행정주사보	24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01
공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7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	27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72
행정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또는 전산서기	1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13
환경서기	8
전산서기	3
행정서기보	2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34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9
환경서기보	16
운전서기보	25
방호서기보	3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4
기록연구사	4
환경연구사	27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30
전기운영서기	1
전기운영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2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단서 관련)

총계	742
일반직 계	742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 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 설사무관	27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 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1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 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
행정주사	24
행정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 또는 전산주사	3

행정주사 · 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4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32
공업주사 · 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32
환경주사	4
행정주사보	24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04
공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6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	27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71
행정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또는 전산서기	1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13
환경서기	8
전산서기	3
행정서기보	22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9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9
환경서기보	16
운전서기보	22
방호서기보	3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4
기록연구사	4

환경연구사	27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30
전기운영서기	1
전기운영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2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본문 관련)

총계	349
일반직 계	349
고위공무원단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 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 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 설사무관	18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 무관 ·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 관 또는 전문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연 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
행정주사	9
행정주사 · 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59
공업주사 · 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13
환경주사	1
행정주사보	9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2
공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2
행정서기	3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41
행정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또는 전산서기	1
공업서기 또는 환경서기	6
환경서기	3
전산서기	2
행정서기보	9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2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
환경서기보	12
운전서기보	11
방호서기보	2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
환경연구사	17
기록연구사	3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1
사무운영서기보	3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단서 관련)

총계	351
일반직 계	351
고위공무원단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연구관 · 보건연 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 설사무관	18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 사무관 ·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 구관 또는 전문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1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 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
행정주사	9
행정주사 · 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62
공업주사 · 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13
환경주사	1
행정주사보	9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8

공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2
행정서기	3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36
행정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또는 전산서기	1
공업서기 또는 환경서기	6
환경서기	3
전산서기	2
행정서기보	9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2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
환경서기보	7
운전서기보	10
방호서기보	2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
환경연구사	17
기록연구사	3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1
사무운영서기보	3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본문 관련)

총계	68
일반직 계	68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문관	2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전문관	1
행정주사	3
행정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1
공업주사 · 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3
행정주사보	3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7
공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
행정서기	3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
공업서기 또는 환경서기	3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4
환경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방호서기보	1
기록연구사	1
환경연구사	3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3
전기운영서기보	1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단서 관련)

총계	69
일반직 계	69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문관	2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전문관	1
행정주사	3
행정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2
공업주사 · 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3
행정주사보	3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7
공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
행정서기	3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4
공업서기 또는 환경서기	3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2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4
환경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방호서기보	1
기록연구사	1
환경연구사	3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3
전기운영서기보	1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본문 관련)

총계	172
일반직 계	172
고위공무원단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	3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	7
전산사무관	1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행정주사	3
공업주사	2
시설주사	7
시설주사 또는 연구사	2
전산주사	4
방송통신주사	12
기상주사	2
행정주사보	1
공업주사보	3
시설주사보	6

전산주사보	3
방송통신주사보	19
기상주사보	4
행정서기	13
공업서기	3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
시설서기	4
전산서기	1
방송통신서기	5
행정서기보	5
공업서기보	3
방송통신서기보	3
운전서기보	2
위생서기보	2
방호서기보	4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7
기상연구사	4
통신운영서기보	2
열관리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2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단서 관련)

총계	172
일반직 계	172
고위공무원단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	3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항공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1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	7
전산사무관	1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행정주사	2
공업주사	2
시설주사	7
시설주사 또는 연구사	2
전산주사	4
방송통신주사	12

기상주사	2
행정주사보	1
공업주사보	3
시설주사보	6
전산주사보	3
방송통신주사보	19
기상주사보	4
행정서기	13
공업서기	3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
시설서기	4
전산서기	1
방송통신서기	5
행정서기보	5
공업서기보	3
방송통신서기보	3
운전서기보	2
위생서기보	2
방호서기보	4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7

기상연구사	4
통신운영서기보	2
열관리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0항 관련)

총 계	22
일반직 계	2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심사관)	6
행정주사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4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변인) ① (생 략)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u>서기관 · 기술서기관 ·</u>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u> <u>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u> <u>관 또는 환경사무관</u> 으로 보한 다. ③ · ④ (생 략)	제2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u> <u>·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u> <u>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환경사</u> <u>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 --.
제2조의2(감사관) ① (생 략)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조사담당관을 두되, 감사담 당관 및 환경조사담당관은 <u>부이</u> <u>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③ · ④ (생 략)	제2조의2(감사관)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u>부이</u> <u>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u> <u>기관</u> -----.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③ (생 략)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 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u>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u>

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및 환경교육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⑳ (생략)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 ⑤ (생략)

⑥ 물관리정책실에 물정책총괄과·물이용기획과·토양지하수과·물환경정책과·수질수생태과·생활하수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관리과 및 물산업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 ⑰ (생략)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① (생략)

② 자연보전국에 자연생태정책과·생물다양성과·자연공원과·국토환경정책과 및 환경영향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학기술서기관·서기관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⑦ ~ ㉑ (현행과 같음)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⑦ ~ ㉑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

으로 보한다.

③ ~ ⑦ (생 략)

제8조(자원순환국) ① (생 략)

② 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
과 · 폐자원관리과 · 생활폐기물
과 · 자원재활용과 및 폐자원에
너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으로 보한다.

③ ~ ⑦ (생 략)

제9조(환경보건국) ① (생 략)

② 환경보건국에 환경보건정책
과 · 환경피해구제과 · 생활환경
과 · 화학물질정책과 · 화학제품
관리과 및 화학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
로 보한다.

③ ~ ⑧ (생 략)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① (생
략)

②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지원
과 및 연구전략기획과를 두되,
연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

기관-----.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자원순환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
기관-----.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환경보건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

----- 부이사관 · 과학기술
서기관 · 서기관 -----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① (현행
과 같음)

② -----

----- 과학기술서기관

기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① (생략)

②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기획총괄팀·정보관리팀 및 감축 목표팀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정보관리팀장 및 감축 목표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정책지원팀 및 배출량조사팀을 두되, 정책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

서기관-----.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①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
--.

②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

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배출량조사
팀장은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
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
로 보한다.

③ · ④ (생 략)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
원)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
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
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질병감시팀 · 질병대응팀 및 질
병연구팀을 두되, 질병감시팀장
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질병대응팀장 및 질병연구팀장
은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
무관 · 환경사무관 · 행정사무관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
원) ①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② -----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환경사무
관 또는 행정사무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제27조(환경관리국) ① 환경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③ 환경관리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 · 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 ⑧ (생략)

제28조(유역관리국) ① 유역관리

제26조(총무과) ①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환경관리국) ①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현행과 같음)

③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8조(유역관리국) ① 유역관리

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 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상수원관리과·수질총량관리과 및 수생태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제28조의2(하천국) ① 하천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③ 하천계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하천공사1과장·하천공사2과장·하천관리과장·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⑧ (생략)

국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

---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하천국) ①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 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화학안전관리단) ①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제28조의4(대기환경관리단) ① 대기환경관리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제29조(환경감시단) ① 환경감시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제31조(지방환경청) ①·② (생

제28조의3(화학안전관리단) ①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4(대기환경관리단) ①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사무관 -----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환경감시단) ①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지방환경청) ①·② (현행

략)

③ 기획평가국장 및 새만금유역
관리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
기관으로, 하천국장 및 하천계
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으로, 운영지원과장·수질총량
관리과장·환경감시과장·수질
관리과장·기획과장·환경관리
과장·자연환경과장·환경평가
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행정사
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으로, 하천공사과장 및 하천관
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
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
무관으로, 화학물질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
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측정분석과장은 공
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
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으로,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서기

과 같음)

③ 기획평가국장 및 새만금유역
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
는 서기관으로, 하천국장 및 하
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
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
수질총량관리과장·환경감시과
장·수질관리과장·기획과장·
환경관리과장·자연환경과장·
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
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
및 하천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
는 행정사무관으로, 화학물질관
리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 행정사무관·공업연구관·보
건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
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측정분
석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
·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
는 환경연구관으로, 화학안전관

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① (생략)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에 기획과 · 대기총량과 · 조사분석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대기총량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34조의3(홍수통제소)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행정사무관 ·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행정사무관 -----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행정사무관 -----
또는 전문관으로-----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홍수통제소) ① -----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
급으로 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
장·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
강홍수통제소장은 서기관·기
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
다.

② 홍수통제소에 운영지원과·
예보통제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
되,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
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
로, 예보통제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전기통신과장
은 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
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운영
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
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
관·환경사무관·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제34조의4(수자원정보센터) ① 수
자원정보센터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과학기술서기
관·서기관 -----
--.

② -----

-- 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시설사무관·환경사무관·방송
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
로-----

-----.

----- 공업사무관·전산사
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수자원정보센터) ① --
----- 과학기술서기
관 -----.

② (생략)

제35조(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생략)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6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환경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② · ③ (생략)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이사관 · 과학
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제36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10퍼센트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②·③ (생략)

④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3과 같으며, 별표 10의3의 정원 중 1명(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으며, 별표 12의 정원 중 홍보·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⑦ 지방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0퍼센트-----

-----을
임용하고, 그 밖의 정원 중 1명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⑦ -----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으며, 별표 14의 정원 중 홍보·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⑧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으며, 별표 16의 정원 중 홍보·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⑨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

-----.

10퍼센트-----

-----.

⑧ -----

-----.

----- 10퍼센트-----

-----.

⑨ -----

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6의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3과 같다.

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⑪ ~ ⑬ (생략)

제3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직제 제5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녹색전환정책관·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및 국립생물자원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1

---. -----

----- 10퍼센트-----

----- 같
으며, 별표 16의3의 정원 중 2명
(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⑩ -----

-----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
다.

⑪ ~ ⑬ (현행과 같음)

<삭 제>

개 직위를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자연환경연구과장,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